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박성택*, 김영기**

A Study on Patent Valuation for the Activation of IP Finance

Seong-Taek Park*, Young-Ki Kim**

요약 기술혁신은 기업의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식재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보물인 기술 및 지식인 특허를 통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IP 관련 금융제도가 보증문제, 관련 규정 등의 미흡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 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담보 대상인 IP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IP 금융에 필요한 특허가치평가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IP, IP금융, 특허가치평가, 주식가치평가, 특허

Abstract Since technological innovation is such an important factor that it can determine a company's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 enhancement, all the companies make lots of investments and effort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s outcom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are patents, trademark and copyrights, etc. and they are mostly approved as a legal right call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activate such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inancing techniques are needed for enterprises to raise funds through collaterals, such as technological and intellectual patents. In reality, however, any IP-related financial system is not really activated due to the lack of surety-related regulations in Korea. Thus, on the premise that it is important to carry out an objective and reliable valuation on IP as a collateral for the activation of IP finance,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various different methods of patent valuation needed for IP finance.

Key Words : IP, IP Finance, Patent Valuation, Stock Valuation, Patent

1. 서론

특허가 글로벌 기업들의 중심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M&A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되면서부터 사모펀드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식재산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특허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특허를

출원하였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또한 지금까지는 특허를 단순히 방어적인 수단으로 인식하였으나, 특허가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게 되면서부터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특허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임영모(2010)는 특허 비즈니스 모델을 라이선싱, 지원서비스, 금융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10] 라이선싱은 특허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원서비스 모델은 특허의 중개, 경매, 평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는 특허를 담보로 대출 방식, 유동화 방식, 주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홍익대학교 강사, 경영학박사(제1저자)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11월 20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2월 10일

식투자 방식, 주식-부채의 복합금융 방식, 지분조달, 정책금융, 구조화 금융 등으로 다양하다.

지식재산산업의 본질적인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금융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식재산 관련 산업은 새로운 분야이며, 기술과 지식을 사업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험의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적 프로젝트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위험을 부담하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자본시장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3].

일반적으로 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의 유형으로는 벤처캐피탈, 기술담보대출, 정책금융, IP 펀드, 구조화 금융 등이 있다.

2012년 5월부터는 기존 벤처기업 외에 이노비즈 인증 기업들도 코스닥 상장 특례가 적용됨으로써 코스닥의 상장 문턱이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노비즈 인증이란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진 3년 이상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청이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 등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을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매출액이 없는 회사도 기술가치평가 만으로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융·복합된 기술에 대한 전문적 평가체계도 바뀌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기술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술가치 연계보증제도’는 기술을 통해 미래에 예상되는 기업의 수익 등을 현재 가치화를 통해 산정하는 것으로, 매출액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매출이 정체 상태에 있거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IP 금융을 위한 많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IP 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담보 대상인 IP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인 기업의 가치평가가 중요하듯 IP 펀드에 있어서 특허를 매입할 당시의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개발 중인 초기단계의 연구나 기술을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적을 수도 있으나, 상업화 및 사업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성공 가능성도 높지

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핵심 사업을 변경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해 필요가 없어진 특허라 할지라도 이미 입증된 사업성으로 인해 특허의 매입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미 시장에서 사라진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를 다른 회사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MS가 AOL의 특허를 인수 하였고, 다시 페이스북은 MS가 구입한 925건중 650건의 특허를 5억 5000만달러에 사들였다. 페이스북이 최근 야후로부터 받은 특허소송에 대비하고자 특허를 매입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IP 금융에 필요한 특허가치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IP 금융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은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자금조달을 하는 수단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채권(회사채)을 발행하는 방법,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고 그것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는 비재무적인(non-corporate) 방식도 존재한다. 기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는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성격과 규모 및 자금 운용, 투자자 측면의 사정 등에 달려있지만, 이것들을 재정(arbitrage)하는 지표 리스크를 전제로 한 금리라고 할 수 있다[4].

IP 금융이 중요한 이유는 혁신을 촉진하며, 우수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신생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연간 특허를 담보로 한 대출이 1953건에 1.6조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거의 미비한 수준이다. 기업들은 주로 특허의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 및 투자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올바른 특허의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허가치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특허전략수립과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각 기술의 기여도 산출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1].

IP 금융은 IP와 금융의 합성어이다. IP에는 대표적인 특허와 더불어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이 있다. 금융은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자본과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였듯이 특허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여야 한다. 특허의 거

래 활성화를 통한 특허의 화폐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특허 담보대출이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2010년 8월부터 지식재산담보융자 평가 관리 및 중소기업 발전 지원 통지, 특허권 담보등기 방법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필립스, 대학, 연구소 등의 30개 회원을 확보한 IPXI(Intellectual Property Exchange International) 거래소가 2012년 말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IPXI 거래소에서는 ULRS(Unit License Right)를 거래한다. 제품 1개에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식과 같이 시장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ULRS의 장점으로는 특허분쟁으로 인한 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규모 기업도 발명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배타적인 라이선스는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8].

IP 금융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IP 금융은 정책금융, 구조화 금융, 유동화방식, 주식투자방식, 특허담보 대출, 복합금융방식, IP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2.1 정책금융

정부의 정책자금을 말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공사, 공공 벤처 캐피탈 등이며, 주로 정부의 출자금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2.2 구조화 금융

IP 기반 구조화 금융이란 미래의 지식재산 수익에 대한 권리를 미리 판매함으로써 R&D 등 현재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말한다[5].

2.3 유동화방식

유동화 방식은 지식재산으로부터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 등이 얻어지는 경우 이를 수익증권화 하여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로열티 수입흐름 등을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동화에 성공을 하면 지식재산권의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새로운 지식재산 R&D 등에 투자할 수 있다[5]. 기술 유동화자산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현금흐름,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기술 사업화 등을 통한 미래의 현금흐름 등이 있다[3].

2.4 주식투자방식

투자자가 지식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주식 방식을 말하며, 벤처캐피탈로도 불리기도 한다. 벤처캐피탈은 투자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진 초기 형태의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5]. 벤처캐피탈 금융에는 모태펀드와 벤처투자 조합 등이 있다.

2.5 특허담보대출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 방식에는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민간의 금융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 높은편이다.

2.6 복합금융방식

금융회사나 사모펀드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가진 기업에 대출 내지 채권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되 신주인수권이나 다양한 형태의 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동시에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5].

〈표 1〉 IP 펀드의 수익구조

회수방식	구조	비고
Patent Licensing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 및 기술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창출	통상 특허권 분쟁을 따르며, 법원에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Patent Trading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 매각을 통한 수익을 창출	제록스의 삼성 잉크젯 프린터 기술의 매각 특허의 상품성 입증이 매우 중요
Technology Licensing	대학 및 연구소가 개발한 초기단계의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에 라이선싱 Licensing fee+on-going royalty의 수익 창출 구조	기술의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성공여부도 확실치 않음
IP Venturing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에 특허권을 제공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특허권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 선도기업의 경우 별도의 자금 투자 없이 벤처기업의 지분 획득 가능

출처: 정인혜, VCPE, 2009, pp. 1-2.

2.7 IP 펀드(창의자본형)

창의자본형은 투자자를 모아 사모펀드 등을 구성한 뒤 해당 펀드가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를 직접 영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사들여 특허권을 구성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5]. 그러나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 규모가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그 규모도 영세하기 때문에 성장에는 제약이 있다[3].

3.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가치평가

본 장에서는 IP 금융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써 특허가치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식가치평가 방식, 시장접근 방식, 정성적평가 방식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독립적으로 평가는 가능하지만 하나의 특허만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특허는 약 7만 8천개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특허는 약 5만 8천개로 추산되고 있다.

코닥의 사례를 살펴보면, 코닥(Kodak)은 즉석카메라(instance camera)를 생산 개시하였으나, 폴라로이드(Polaroid)가 보유한 특허덤불(patent thicket)에 의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1990년의 특허 침해라는 법원 판결에 의해, 약 30억불(3조원)의 비용을 치렀다. 자세히 살펴보면, 폴라로이드사에 대한 보상액 9억불(9천억원), 공장 설비 폐쇄에 따른 손실 15억불(1조 5천억원), 1976~1985년에 판매한 1천 6백만개의 카메라 환수에 따른 비용 5억불(5천억원), 14년에 걸친 법적 비용 1억불(1천억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그 외에도 700명의 직원을 해고하였으며, 10년에 걸친 R&D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물론 결과는 코닥의 실패로 끝을 맺었지만, 그 당시 코닥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소송 시기(timing)도 코닥의 비용에 큰 변화를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경우는 제품의 판매대수에 로열티를 곱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이다.

IP 금융에 있어 특허의 가치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정하고 올바른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며 여기에 다음 네가지의 방법이 있다.

3.1 주식가치평가 방식

상장 또는 장외 등록법인의 주식은 시장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이들의 거래로 인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 되는 가격이 없으므로 평가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확실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시장의 전반적인 제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9]. 사업 초기 형태의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사모펀드를 구성한 후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직접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

3.2 시장접근 방식

3.2.1 무형자산 평가의 방식

IP 가치평가 방법 중의 하나로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유형자산을 제하고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출한 후에 다시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goodwill 등의 가치를 제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비교적 쉽고 빠르게 산출을 할 수 있으며, 미래 예측치를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유형자산의 가치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점으로는 시가총액이 급변하는 경우 신뢰성의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비상장 신생기업의 경우는 평가 기법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개개 특허의 가치를 산출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다.

방법의 한계로는 첫째,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기업, 특히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둘째, IP의 가치가 시가총액을 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가치평가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7].

모토로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8월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Motorola Mobility Holdings, Inc.)를 당시 주가 25달러에 60%의 프리미엄을 붙인 주당 40달러에 인수키로 하였고, 총 액수는 125억불에 이르고 있다.



[그림 1] 모토로라의 주식 흐름



[그림 2] AOL의 주식 흐름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이동전화기 사업이 매우 부진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총 인수액의 거의 대부분이 모토로라가 보유한 약 17,000개의 특허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는 salesforce.com 의 드림포스 2011 행사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허 이상을 보고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입니다. 모토로라 팀에서 놀라운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토로라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거기서 뭔가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밝혔다. 이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구글이 치룬 125억불의 인수 대금 거의 전부가 모토로라의 특허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기 전에 산출한 IP의 가치는 실제 거래액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렇듯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에서 IP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은 정확성에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IP의 거래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이유로는 첫째, 관련 제품의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가 있겠다. 둘째, 이질적 산업들의 기술이 결합하여 신제품이 등장하는 경우에 특허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IP의 거래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스마트폰이 또 다시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이질적 산업들 즉 컴퓨터 산업, 무선전화기 산업, 카메라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기술들의 결합으로 등장한 제품이기 때문이다[11].

실례로 2012년 4월 9일 MS가 AOL의 특허 800개 이상을 10억 6천만불에 매입하는 거래가 성사되었음이 발표되었고, AOL의 주가는 즉시 40%가 폭등하였다.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렇듯 급격히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에서 유형자산의 가치를 제해서 산출하는 무형자산의 가치는 그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AOL은 여전히 300개 정도의 특허를 계속 보유한다고 발표하였다. 2012년 4월 23일 Facebook은 MS가 AOL로부터 구입한 925개의 특허 중 650개를 5억 5천만불(5천5백억)에 구매를 하였다. 이는 Yahoo가 제기한 특허소송(2012년 3월 12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2.2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방식

실질적으로 비슷한 특허거래액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세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기술가치평가의 시장접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술의 거래 실적, 기술거래 가격 등을 비교하여 가능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과 동일하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관련 특허의 가격을 보고 관련 특허 내에서의 중요도나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능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된다. 2011년 6월 애플 컨소시엄은 파산한 캐나다 통신회사인 노텔의 6,000개 특허를 45억불에 매입하였다. 얼마후 구글은 17,000개의 특허를 보유한 모토로라를 125억불에 인수하였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주된 목적이 특허라고 가정을 한다면, 노텔의 인수가격에서 유추하면 $45 \times 17,000 / 6,000 = 127.5$ 이 된다. 이는 실제 인수가격인 125억불에 매우 가까운 숫자이다.

3.3 정성적평가 방식

일반적으로 특허가치평가 방법으로는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로 구분 할 수 있다. 정량적인 평가로는 기술 수명주기 분석, 재무분석, 할인율 추정 등이 있으며, 정성적인 평가로는 기술평가, 기업평가 등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정량적인 평가는 자본시장의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성적인 평가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델파이법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가 있다. 델파이법은 궁극적인 목적이 현재 상황과 현재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을 돕는데에 있으며, 예측조사의 방법으로서 가지는 의의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써 정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AHP는 두 개의 요인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비교의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과정에서 두 요인의 선호도만을 요구하므로 정량적 정보는 물론 정성적인 의사결정자의 경험이나 직관적 정보도 활용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써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지만, 계층구조를 구성하는 요인들간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계층 수준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김영기외(2010)의 연구에서는 순위형식의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특허가치평가의 중요요인을 도출하였다. 국내 특허가치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4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중요 요인의 리스트와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2]. 박성택외(2011)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허가치평가의 요소들 중에서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요 요소 7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소를 가지고 특허가치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제품군별로 특허가치평가 중요 요소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6].

4. 결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지식재산을 활용하거나 관리하는 등 중요성이 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R&D 등 기술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혁신은 기업의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

므로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혁신의 결과물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독점적인 권리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재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보물인 기술 및 지식인 특허를 통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필요하게 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IP 관련 금융제도가 가치평가와 같은 보증문제, 관련 규정 등의 미흡으로 인해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 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담보 대상인 IP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IP 금융에 필요한 특허가치평가의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주식이치평가모델이다.

비교적 쉽고 빠르게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창업기업이 아닌 상장된 기업이라면 주식이치평가모델을 적용해 볼만하다.

둘째, 무형자산이란 회사가치에서 유형자산을 제외한 것이다.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유형자산의 가치를 제하면 무형자산의 가치가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쉽게 계산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신뢰도를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용해 볼만한 방법이다.

셋째, 실질적으로 비슷한 특허거래액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관련성이 있는 특허의 거래가 존재한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

넷째, 정성적인 평가 방식이다. 특허가치평가가 정량적인 평가방식과 한축을 이루고 있는 정성적인 평가 방식인 델파이법과 AHP를 이용하여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IP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네가지 방식이 기업 및 기관들이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

떠본 특허가치평가의 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많은 기업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사례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1] 김영기 · 박성택 · 이승준 (2009). 특허가치평가 요소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7(2), 63-70.
- [2] 김영기 · 박성택 · 이승준 (2010). 특허가치평가 중요요인 도출에 대한 델파이 연구.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9(1), 7-17.
- [3] 김필규 (2011). IP 금융 활성화 방안. IP 사업화 포럼 발표자료.
- [4] 권재열 (2012). IP금융의 현황과 법제도적 문제점, 한국지식재산학회 추계학술대회 토론문.
- [5] 노진호 (201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금융 활성화 방안. *Weekly Hana Financial Focus*(4.2-4.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6] 박성택 · 이승준 · 김영기 (2011). AHP를 이용한 제품군별 특허가치평가 요소의 중요도 분석.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0(1). 115-127.
- [7] 박성택 · 이승준 · 김영기 (2012). IP 금융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 [8] 박성택 · 김영기 (2012). IP 금융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9] 윤정훈 (2000). 획일적인 주식가치 평가와 그 대안. *신펡이슈* 10.
- [10] 임영모 (2010). 진화하는 특허 비즈니스. SERI 경영노트. 삼성경제연구소.
- [11] 정인혜 (2009). 숨겨진 블루칩. 지적재산권에 투자하다 vcpe.
- [12] Economist (2010). Smart-phone lawsuit: The great patent battle.

박성택



- 2003년 8월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0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경영학박사)
- 2011년 7월 ~ 2012년 6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현재 : 홍익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특허가치평가, R&D, 특허경영전략, e-learning, 비즈니스 전략 등

· E-Mail : solpherd@skku.edu

김영기



- 1978년 : 서울대학교 학사
- 1987년 : Univ. of Iowa MBA(경영학석사)
- 1992년 : Univ. of Iowa(경영정보학박사)
- 1993년 ~ 현재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보통신, 특허가치평가, 특허경영전략, e-learning, 소프트웨어 방법론 등

· E-Mail : ykkim@cbnu.ac.kr